

# 언론중재 제도의 기능과 관련법의 새로운 쟁점

석 희 태

(경기대학교 법대교수, 법학박사)

## 1. 언론피해 조정 · 중재제도의 기능

언론의 자유 · 언론의 사명과 국익 · 공익 · 사익의 충돌이 있는 경우에 그 조화를 어떻게 이룰 것인가는 영원한 난제라고 할 수 있다.

민사법 · 형사법,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(이하 ‘언론중재법’으로 약칭함) 등의 현행 법이 고안해서 설정해 놓은 여러 충돌해결방안들은 바로 이러한 난제에 대한 깊은 배려의 소산이 아닌가 한다. 특히 언론중재위원회에 의한 정정보도 · 반론보도 · 추후보도 · 손해배상에 관한 조정과 중재, 시정권고결정이라는 제도는 사법부에 의한 전통적인 소송절차제도에 비해 상당한 특징과 장점을 지닌 것으로서, 매우 성과 있는 사회적 기능을 담당해 온 것이 사실이다.

아래에서 요약적으로 열거되는 이 제도의 특징 내지 장점<sup>1)</sup>은 언론중재 제도의 사회적 기능을 지지하고 제고하는 요소라고 말할 수 있다.

### ① 공정성

언론중재위원회의 중재부는 전문성을 갖춘 다수의 위원으로 구성되며, 다수결 합의에 의하여 결론이 내려지므로(언론중재법 제7조~제10조), 판단에 공정성을 유지할 수 있다.

### ② 신속성

조정 및 중재가 당사자의 신청일로부터 매우 짧은 기간내에 이루어지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(언론중재법 제19조 2항, 조정은 신청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하여야 함) 당사자의 의향 내지 협조에 따라서는 신속하게 분쟁이 결말지어질 수 있다.

### ③ 해결방안의 다양성(합리성)

분쟁해결의 방안이 손해배상이나 형사처벌에 한정되지 않고, 당사자의 이익보호에 적절한 정정보도 · 반론보도 등 다양성을 지니고 있어서 구체적 상황에 적응하는 합리적 해결이 가능하다.

### ④ 경제성

조정신청에 대해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고(언론중재법 제18조 5항), 증거조사에 필요한 비용을 당사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으나(동법 제20조 4항) 그 액수는 소송비용에 비하면 현저히 저렴할 것이므로 경제적이라고 할 수 있다.

### ⑤ 전문성

소송에서 법관의 전문성을 의심하기는 곤란하겠는데, 언론 조정 · 중재 절차는 법관뿐만 아니라 변호사, 전직 언론인,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등이 참여하여 합의제로 운영하므로(언론중

1) 관점에 따라서는 장점이 오히려 단점으로 인식되는 요소도 있음.

재법 제7조 3항, 제9조) 더 높은 판단의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다.

**⑥ 화해성**

조정절차에서 중재위원은 조정대상인 분쟁에 관한 사실관계와 법률관계를 당사자들에게 설명·조언하거나 절충안을 제시하여 합의를 권유하게 되는데(언론중재법 제19조 5항), 이는 소송 절차에서와 같은 단순한 직권적·일방적 판단·평가에서보다 훨씬 유연한 당사자의 자세와 상호이해 및 양보를 이끌어 낼 수 있는 방법으로서, 결국 쌍방의 완전한 화해를 가능하게 한다.

**⑦ 편의성**

조정·중재신청은 서면뿐만 아니라 구술 또는 전자우편의 방법으로도 할 수 있으며(언론중재법 제18조 3항, 4항) 조정과정에서 변호사 아닌 사람도 신청인 또는 피신청인을 대리할 수 있으므로(동법 제19조 6항, 7항)소송의 방식보다 더욱 편의하다.

**⑧ 비공개성**

조정·중재절차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는데(언론중재법 제19조 8항) 이는 당사자의 비밀과 명예를 보전하는 방법이 된다.

아래에서 제도의 내용을 조건·요해하기 위해 언론피해 구제방안을 표로써 개관하고자 한다.

**[표 1] 법률상 언론피해구제방안 채택현황 비교**

구 분	민법	형법	언론중재법
정정보도청구제도	X *	X	O (법 제14조, 제15조, 제18조, 제24조, 제26조)
반론보도청구제도	X *	X	O (법 제16조, 제18조, 제24조, 제26조)
추후보도청구제도	X *	X	O (법 제17조, 제18조, 제24조, 제26조)
손해배상청구제도	O (법 제750조, 제751조)	X	O (법 제18조, 제24조, 제30조 1항, 2항)
인격권침해정지 및 침해예방청구제도	X	X	O (법 제30조 3항)
인격권침해관련 물건폐기 등 청구제도	X	X	O (법 제30조 4항)
명예회복처분청구제도	O (법 제764조)	X	O (법 제31조)

시정권고청구제도	X	X	O (법 제32조)
형사처벌제도	X	O (법 제309조 명예훼손죄, 제311조 모욕죄, 제313조 신용훼손죄, 제314조 업무방해죄)	X

\* 민법상 명예회복처분의 구체적 방법으로 채용될 수도 있음

[표 2] 언론피해구제방안별 요건·절차·내용의 비교

	요건	절차	내용
정정보도	· 보도내용의 비진실성(허위성) · 피해의 발생 · 언론사의 고의·과실 및 보도행위의 위법성은 불요	· 법원의 소송절차 · 언론중재위의 조정 · 언론중재위의 중재	진실에 부합되게 고쳐 보도
반론보도	· 보도내용의 비진실성 불요 · 피해의 발생 · 언론사의 고의·과실 및 보도행위의 위법성은 불요	상동	보도내용에 대립되는 반박적 주장의 보도
추후보도	· 범죄혐의 있거나 형사상 조치 받았음의 보도 · 무죄판결 또는 그와 동등한 형태의 종결 · 언론사의 고의·과실 및 보도행위의 위법성은 불요	상동	종결사실에 관한 보도 및 명예·권리의 회복에 필요한 해명의 보도
손해배상	· 손해(정신적 손해 포함)의 발생 · 언론사의 고의·과실 및 보도행위의 위법성 필요	상동	금전에 의한 배상
인격권침해 정지 및 침해예방	· 인격권의 침해 또는 명백한 침해의 우려 있음	· 법원의 소송절차	침해의 정지 및 침해예방조치
인격권침해 관련물건 폐기	· 인격권 침해행위에 제공되거나 침해행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물건의 잔존	상동	관련물건의 폐기나 기타 필요한 조치의 강구
명예회복 처분	· 명예의 훼손 · 정정보도 방식 이외의 경우 언론사의 고의·과실, 위법성을 필요로 함	상동	손해배상과 함께 혹은 손해배상에 갈음하여 정정보도의 공표 기타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 실행
시정권고	· 보도내용에 의한 국가적 법익·사회적	· 언론중재위 시정권	서면에 의한 시정권

	법익·개인적 법익 침해 · 시정권고의 필요성 · 피해자 이외 제3자의 신청도 가능	고소위원회의 결정	고와 그 내용의 외부공표 및 언론사의 시정
형사처벌	· 범죄구성요건해당성 · 고의·과실과 위법성 · 사자에 대한 명예훼손죄와 모욕죄는 친고죄, 명예훼손죄는 반의사 불벌죄	· 법원의 형사소송절차	형벌

## 2. 언론중재 관련법의 연혁

- 1980. 12. 31. 언론기본법 제정, 정정보도청구권(사실은 ‘반론보도청구권’ 임) 도입
- 1981. 3. 31. 언론중재위원회 제도 도입
- 1987. 11. 28. 언론기본법이 폐지됨과 더불어 언론기본법상의 정정보도청구권은 그 명칭 및 골격이 유지된 채 정기간행물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과 방송법에 분리 수용
- 1991. 12. 31. 종합유선방송법이 제정되면서 종합유선방송에 대하여도 동일한 취지의 ‘정정보도청구권’을 인정
- 1995. 12. 31. 정기간행물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. ‘반론보도청구권’이라는 정식 명칭 채택
- 2005. 1. 27.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제정으로 언론피해구제제도 통합

## 3. 언론중재법의 주요 내용

### (1) 언론의 자유와 책무의 명확화

언론의 자유와 독립(언론중재법 제3조), 언론의 사회적 책임(동법 제4조)이 명정되어 있으며, 특히 인격권(사망자의 인격권 포함) 보호의무(동법 제5조)가 강조되고 있다.

### (2) 적용대상 범위의 다양화

법의 적용대상 범위를 방송·정기간행물·뉴스통신뿐 아니라 인터넷신문으로까지 다양화하고 있다(언론중재법 제2조 1호).

### (3) 자율적 예방활동의 강화

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, 일반일간신문을 발행하는 정기간행물사업자, 뉴스통신사업자는 사내에 언론피해의 자율적 예방과 구제를 담당하는 고충처리인을 두도록 하고 있다(언론중재법 제6조).

### (4) 언론중재위원회의 독립성 전문성 등 보장

언론피해 조정·중재 등 제도의 취지를 구현하고 그 국가사회적 기능을 고도화하기 위해 언론중재위원회를 독립 설치한다.